

청년 자활정책 발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현장 간담회 참석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금) 오전 10시 도봉 지역자활센터(서울 도봉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자활근로 참여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욕구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단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봉구가 운영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1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 청년들에게 최초 6개월간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자활 사업단 근로나 기업 인턴 과정 등 직무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시장 취·창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 참여자(A씨, 27세)는 개인 상담을 바탕으로 제공된 교육·진로 계획 등에 따라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고 보유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지난해 가족센터에 취업,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험담 등을 경청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특화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스란 실장은 “올해 자활 참여자를 3천 명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자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여,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라고 말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실제적인 자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현장 간담회 개요
2. 자활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김미정 (044-202-3071)



붙임 1**청년자립도전사업단 현장 간담회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25.4.11.(금), 10:00~11:00
- (장 소) 도봉지역자활센터(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17)
- (내 용) 청년 자활근로참여자 의견 청취·격려 및 청년 특화 자활사업 관련 현장 애로사항 파악
- (참석자(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자활정책과장
 - (도봉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5인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사업개발부장

□ 세부 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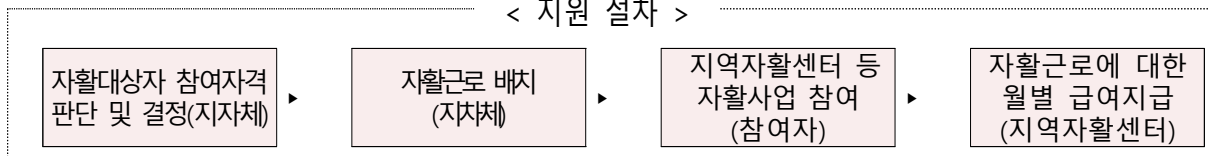
시 간	구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말씀(사회복지정책실장) ▫환영사 및 청년사업단 소개(센터장) 	
10:10~10:50 (40)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 청년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향 논의 등 	
10:50~11:00 (10)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촬영 및 마무리 	

붙임 2

자활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촉진
- (지원대상)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무참여), 조건부 수급자 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참여)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제15조 등
- (전달체계) 시·군·구는 대상자의 취업능력, 근로의지·여건 등 평가(자활역량평가) → 점수에 따라* 고용센터 의뢰 또는 지역자활센터 배치
 - * 평가결과 85점 이상 고역량자는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의뢰, 85점 미만 저역량자는 지역자활센터(전국 250개)의 자활근로사업단 배치

< 지원 절차 >



- (지원내용)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급여 수령,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 (근무여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월 소득 최대 1,670천원*('25년)
 - *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월 급여
 - 근로 역량 및 근무 강도 등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뉜 사업단에서 근무

< 자활근로 유형 >

자활근로 종류	'25년 단가(일)	사업 유형
시장진입형	64,220원	집수리, 청소, 세탁, 제과제빵 사업 등
인턴·도우미형	64,220원/56,210원	사회복지시설·자활업무 행정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56,210원	가사·간병지원 서비스 등
근로유지형	32,980원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등